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307호 2017. 10. 18(수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6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-1420호

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2017. 10. 1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“1대대 서구 지역대장”을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 원활한 지역 통합방위체계 구축
-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도모

2. 주요내용

- 당연직 위원에 “1대대 서구 지역대장” 추가(안 제3조 제2항 제4호)
- 통합방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(안 제4조의 2)
-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. 11. 7.까지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(우)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삼곡동) / ☎ 032-560-4093, FAX 032-560-2710]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1. 제안(개정)이유

- “1대대 서구 지역대장”을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 원활한 지역 통합방위체계 구축
-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통합방위 협의회 활성화 도모

2. 주요내용

- 당연직 위원에 “1대대 서구 지역대장 ” 추가 (안 제3조 제2항 제4호)
- 통합방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(안 제4조의 2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산수반사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별지 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성하되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”로, “사고가 있을 때에는”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4호 “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”을 “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 및 1대대 서구 지역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“인천보훈지청장”을 “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0호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총무담당간사 :”를 “총무담당간사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민방위담당간사 :”를 “민방위담당간사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심리전담당간사 :”를 “심리전담당간사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작전담당간사 :”를 “작전담당간사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정보화담당간사 :”를 “정보화담당간사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예비군담당

간사 :”를 “예비군담당간사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소방담당간사 :”를 “소방담당간사: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수당 등)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부의할”을 “회의에 부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행정기관간”을 “행정기관 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소속 하”를 “소속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주민센터내”를 “주민센터 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<u>관하여</u> <u>필요</u>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필요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그 <u>밖</u>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</p>	<p>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 <u>밖</u>에 ----- -----</p>
<p>제3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<u>구성</u>하되,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, 의장이 <u>사고</u>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3조(협의회 구성) ① ----- ----- <u>성</u>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----- ----- <u>부</u>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----.</p>
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
- 5. ~ 8. (생략)
- 9. 인천보훈지청장
- 10. 그 밤의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③ (생략)

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략)

제4조(협의회의 운영) ①·② (생략)

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- 1. 총무담당간사 : 총무과장
- 2. 민방위담당간사 : 안전총괄실장
- 3. 심리전담당간사 : 홍보미디어과장

② -----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
및 1대대 서구 지역대장
- 5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장
- 10. -- 밤에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위촉 해제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협의회의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- 1. 총무담당간사: -----
- 2. 민방위담당간사: -----
-
- 3. 심리전담당간사: -----
--

- 4. 작전담당간사 : 제17보병사단
507여단 1대대 작전장교, 서부
경찰서 경비교통과장
- 5. 정보화담당간사 : 서부경찰서
정보보안과장, 제17보병사단
507여단 1대대 보안담당관
- 6. 예비군담당간사 : 제17보병사
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
- 7. 소방담당간사 : 서부소방서
소방행정과장

<신 설>

제5조(실무위원회) ① (생 략)

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
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
전 심의
- 2. (생 략)
- 3.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
업무에 관한 협조·조정

- 4. 작전담당간사: -----

- 5. 정보화담당간사: -----

- 6. 예비군담당간사: -----

- 7. 소방담당간사: -----

제4조의2(수당 등) 협의회 회의에
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
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
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
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
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하다.

제5조(실무위원회) ① (현행과 같
음)

- ② -----
-----.
- 1. ----- 회의에 부칠 -----
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 행정기관 간-----

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지원본부) ①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7조(동 지원본부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 주민센터내에 둔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지원본부) ① ----- 소속 하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 <u>밖</u>에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동 지원본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 <u>주</u> 민센터 내-----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